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황운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867

발의연월일: 2024. 10. 24.

발 의 자:황운하·조 국·이해민

김준형 • 신장식 • 김선민

김기표 • 전용기 • 이병진

김재원 · 장종태 · 서왕진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항공 마일리지 사용 및 지연 보상과 관련하여 각종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권익 보호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, 국내대형항공사 간 합병이 임박해 오면서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우려 또한 제기되는 상황임.

그런데 현행법에는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이나 항공마일리지 적립· 사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, 항공운송사업의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개 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항공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항공운송사업의 경쟁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, 항공교통사업자에게 소비자 피해보상 및 항공마일리지 적립·사용 현황 등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며,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의 필요적 포함사항에 소비자 피해구 제 현황 및 항공마일리지 적립·사용 현황을 추가함으로써 항공교통 이용자의 권익 보호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2항제10호 신설 등). 법률 제 호

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항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0. 항공운송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제61조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피해구제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 피해보상 및항공마일리지 적립·사용 현황 등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
제64조제2항제2호 중 "피해현황"을 "피해현황(피해구제 현황을 포함한다)"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"항공운송사업자(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)별 적립 기준 및 사용 기준"을 "다음 각 목의 사항"으로 하며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가. 항공운송사업자(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)별 적립·사용 기준 및 현황
- 나.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4조제2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의2. 제61조제6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)	제3조(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항공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	②
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	
다.	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0. 항공운송사업의 공정한 경
	쟁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
<u>10.</u> (생 략)	<u>11.</u> (현행 제10호와 같음)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
제61조(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)	제61조(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)
① ~ ⑤ (생 략)	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교통	6
이용자의 피해구제 신청현황,	
피해구제 처리결과 등 항공교	
통이용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	
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	
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	
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	
<후단 신설>	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피
	해구제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
	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
	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

⑦ ~ ⑫ (생 략)

제64조(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저 정보의 제공 등) ① (생 략)

- ②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.
- 1. (생략)
- 2. 항공교통이용자의 <u>피해현황</u>및 그 분석 자료
- 3. ~ 5. (생 략)
- 6. 항공교통이용자의 항공권 구입에 따라 적립되는 마일리지 (탑승거리, 판매가 등에 따라 적립되는 점수 등을 말한다)에 대한 항공운송사업자(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)별 적립 기준 및 사용기준

<신 설>

피해보상 및 항공마일리지 적
립ㆍ사용 현황 등의 자료를 추
가로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
<u>다.</u>
⑦ ~ ⑫ (현행과 같음)
세64조(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
정보의 제공 등) ① (현행과 깉
<u>수</u>)
②
<u>.</u>
1. (현행과 같음)
2 <u>피해현횡</u>
(피해구제 현황을 포함한다)-
3. ~ 5. (현행과 같음)
6
<u>다음 각 목의 사항</u>
<u> , , , , , </u>

<u>가. 항공운송사업자(외국인</u> <u>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</u>

<신 설>

- 7. (생략)
- ③ (생략)

제84조(과태료) ① (생 략)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~ 12. (생략)

<신 설>

13. ~ 24. (생 략)

③ • ④ (생 략)

<u>함한다)별 적립·사용 기</u> 준 및 현황

나.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사항

- 7. (현행과 같음)
- ③ (현행과 같음)

제84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
- (<u>2</u>) -----
- -----,
- 1. ~ 12. (현행과 같음)
- 12의2.
 제61조제6항에 따라 자

 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

 짓으로 제출한 자
- 13. ~ 24. (현행과 같음)
- ③ ④ (현행과 같음)